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1 중 “(제21조제1항 관련)”을 “(제21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각각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2명),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28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일반직 계	323
고위공무원단	1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
서기관	1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계획담당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7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행정주사	3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6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전산주사	6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14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 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2
전산주사보	5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9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8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1
행정전문관	2
전문경력관 가군(북한 보도매체 및 위성영상 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북한 보도매체 수신 · 관리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위성영상분석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대비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1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74
일반직 계	74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0
행정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행정서기	2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5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5
방호서기보	5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남북연락 담당)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신설>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단서 신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